

공사 계약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꽃마일로 163번길 6 외 74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과업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일로 163번길 6 외 74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노후하수관로 정비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및 설명서 등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682,284,000원	금584,190,000원	금531,081,818원	금53,108,182원	98,094,000

※ 관급자 관급자재: 7,566,000원

※ 본 공사는 일반관리비 요율은 6.5%, 이윤 요율은 15%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품질관리비(수수료)는 추정가격 및 A값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반영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사는 '전자카드제' 해당 공사이므로 근로자들이 근무일에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과업문의 : **건설과 ☎051-240-4802**]

2. 입찰 및 계약: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8.(금) 09:00 ~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서 제출기한은 2026. 9. 22.(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면허를 등록한 업체
- ※ 종합건설업체가 본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함

-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대표, 소재지 등)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계약체결일 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라.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부산광역시 서구와 기술(특허)보유자 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사전에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체결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용공법: 비굴착보수 RS공법(신기술 제913호), OPL공법(특허 제10-1277128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13.에 따라,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마.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바.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전자입찰의 참가 방법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전자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수단의 미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54,505,077원**

(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1.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의 $\pm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또 계약 체결 후나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천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분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493,748,381원

8.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7,660,817원	5,798,028원	761,860원	10,231,967원	3,709,448원	24,501,684원	1,841,273원	54,505,077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9.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평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 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2)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으로 상대 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평가(건설업 등록 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하고 증빙서류 제출 기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건설역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상대시장에 진출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4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최근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서류조사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실태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해당 낙찰예정자는 개찰 직후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별표2]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우리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마. 본 공사는 우리 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나.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 기타 관련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나.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 **직접노무비가 포함된 노무비 기재**)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고, 원도급자는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마.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 개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 3)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 4) 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아.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5)를 제출해야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 | | |
|-------------------------|-------------------------------|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 ▶ 위험성 평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한 점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을 (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051-240-4143),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아.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8)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서구 재무과	☎ 051-240-4144
◦ 입찰자격, 사업내용, 특허사용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서구 건설과	☎ 051-240-480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차.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 구 홈페이지(www.bsseogu.go.kr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계약정보공개)에 게재됩니다.

2026. 9. 14.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관

입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다. 「상법」, 「건설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00건설 대표 홍길동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 재무관 귀하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낙 찰 금 액 :
- 사 업 기 간 :

☐ 인력구성·운영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붙임6] 수급업체 안전보건평가 기준(예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1)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가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 결과 산정 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출처: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